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3
----------	-------

제출년월일 : 2019. 0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용어 및 조문 정리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 제1항 제11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 신설)
-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의 수수료 징수 종목의 명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으로 정비(안 별표 중 제1호)
- 다.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수수료 종목에서 삭제(안 별표 중 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49호서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동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3. 28. ~ 4. 1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19. 4.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종 목	단위	수수료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삭제	삭제	삭제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5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1건	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건	350원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건	1,000원	
2) 생산실적 증명	1건	350원	
3) 실수요자 증명	1건	350원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350원	
5) 원자재(시설재) 증명	1건	350원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7)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1건	350원	
2) 무적증명	1건	350원	
3) 체적 기재사실 증명	1건	350원	
4) 거주에 관한 증명	1건	350원	
5)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6) 영문국제결혼증명 및 재발급	1건(1매)	3,3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0. (생략)</p> <p>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p> <p>② (생략)</p> <p><신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u>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u> (제3조 관련)</p> <p>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td> <td>1건</td> <td>800원</td> </tr> <tr> <td>2)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td> <td>1건</td> <td>350원</td> </tr> <tr> <td>3) (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1건	350원	3) (생략)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u>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u> (제3조 관련)</p> <p>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위</th> <th style="width: 10%;">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 <td></td> <td></td> </tr> <tr> <td>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td> <td>1건</td> <td>800원</td> </tr> <tr> <td>2) 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r> <td>3) (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삭제	삭제	삭제	3) (생략)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1건	350원																													
3) (생략)																															
종 목	단위	수수료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2) 삭제	삭제	삭제																													
3)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징수과 박선희
연 락 처	02-3153-8792